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중도금대출 안내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계약하신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희망하시는 세대는 대출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기한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 방문예약 인터넷 사전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하오니 협조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방문예약	2022년 08월 05일(금) ~ 2022년 08월 09일(화)
방문인원	계약자 본인(대출 서류 접수는 대리인 불가)
온라인 예약방법	골드클래스 홈페이지(http://ddg.goldclass.co.kr) ☞ 예약 ☞ 방문예약

방문예약 문의전화 ☎ 062)233-3999 (내선 507)

대출서류 접수일정	▶ 2022년 08월 11일(목) ~ 2022년 08월 13일(토)
시간	▶ 10:00 ~ 16:00 (15:30분까지 입장)
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26-1 조례3차 골드클래스 견본주택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취급점 : 광주은행 문화전당지점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1층 (광산동, 안산빌딩) 담당자 : 대리 한지선 대리 이명준 전화번호 : 062-227-4221 팩스번호 : 0505-082-1320 / 0505-082-1571</p> </div>



순천조례골드클래스3차 임대아파트 중도금대출 안내장



대출대상	▶ 계약금(10% 이상) 납부한 계약자로 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 및 대출조건이 가능한 고객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옵션금액 제외)의 49% 이내 (중도금범위내) (LTV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대출가능금액 이내)				
대출만기	▶ 입주예정월 + 3개월 (2024년 02월 29일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만기일 중 빠른날) · 상환시기 및 방법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를 매월 납부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x연이율x대출일수÷365(윤년은 366)				
대출금리	▶ 연 5.23% (2022.07.29.기준, 신규COFIX3개월변동 기준금리 + 가산금리 2.85%, 교육세 포함)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의 기준금리에 따라 적용되며, 실행시점 기준금리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 총 4회차, 분양대금의 49% 이내(각 회차별 납부약정일에 자동실행하여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입) 1회차(12.25%) 2022.09.08 2회차(12.25%) 2022.12.10 3회차(12.25%) 2023.04.10 4회차(12.25%) 2023.08.10				
대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2.08.11.(목) ~ 2022.08.13.(토) [오전 10:00 ~ 오후 04:00]				
	▶ 접수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26-1 조례3차 골드클래스 견본주택				
	▶ 구비서류 : 2page 참고 ▶ 대출서류 접수 및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하며, 계약자 본인(공동계약자 포함)만 가능합니다. ▶ 중도금대출 신청자는 광주은행 중도금통장 신규 및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서류접수 전 스마트뱅킹(광주은행 앱 다운로드)에서 계좌 및 전자금융 신규를 해 오시면 대기시간 단축 및 신속한 상담 가능합니다. (계좌 및 전자금융 신규 안내문 참조) (중도금대출 서류 접수장소에서도 계좌 및 전자금융 신규 가능/타행 OTP 사용자는 지참 요망) · 신규 계좌는 인지세, 중도금대출이자, 보증료 납부, 중도금대출 상환 등에 사용됩니다. ▶ 접수기간 내 방문하여 통장개설, 구비서류 제출 및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대출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2.08.25.(목) ~ 2022.08.27.(토) 3일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중도금대출 신청(계좌비밀번호 4자리 꼭 기억)				
	[스마트폰 신청] ① 광주은행 어플 접속 → 상품물 → 대출 → 담보(기타) → 중도금대출 약정 ② m.kjbank.com 접속 → 상품물 → 대출 → 담보(기타) → 중도금대출 약정 (“광주은행 본인인증” 앱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인증, 본인계좌 (당·타행) 확인, 공동인증서 및 신분증 필수) [인터넷 신청] http://www.kjbank.com 접속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발급 또는 공동인증서등록 → 로그인 → 전체메뉴 → 개인뱅킹 → 대출 → 중도금대출 신청 → 익명업일 광주은행 콜센터 본인확인 (발신번호 T.062-239-5000 본인확인 전화 수신) ※ 본인확인 절차 완료해야 대출 신청 완료됨 ※ 인터넷 도우미 : T.1600-4000, 통화가능시간 : 평일 9:00~17:30, 별도 안내장 참조				
대출관련 비용	▶ 2022.08.31.(수)까지 본인명의 중도금통장(광주은행)에 부대비용(인지세+보증료)을 입금하신 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님의 각각 50%씩 부담 · 고객 부담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5,000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5,000원 ▶ 보증료 : 고객 부담(보증료를 적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기준에 따름)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유의사항	▶ 대출한도 확인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 전원이 방문해주시거나, 방문 불가 시 배우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에도 정부 정책변경 및 신청인의 신용정보, 보증서 발급 거절, 당행 내규에서 정한 여신비적격자 해당 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광주은행 주택관련대출 총 2건(신청건 포함) 범위 내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중도금대출 회차별 실행기간 중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연체발생, 신용정보 변경 등)로 인해 대출이 중도에 미실행 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 중도금대출의 원금 및 이자 부담의 최종 책임은 대출을 신청하신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채무인수 유의사항	▶ 채무인수인의 대출한도, 소득, 신용정보, 세대의 보증 건수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채무인수인에게 채무인수수수료 150,000원이 부과됩니다.				
대출 담당자	취급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광주은행 문화전당지점	대리 한지선 대리 이명준	062-227-4221	0505-082-1320 0505-082-1571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1층 (광산동, 안산빌딩)

구비 서류 안내

[순천조례골드클래스3차 임대아파트]



서류관련 유의사항

- ▶ 구비 서류는 (2022.08.01.(월) 포함)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 서류 발급 시 본인 및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바랍니다.
- ▶ **대출한도 확인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 방문해주시거나 방문 불가 시 배우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 공동계약자의 경우에는 공동계약자 모두 대출 서류 작성을 위해 공동계약자 모두 현장 방문하셔야 하며, 구비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및 배우자 발급 ☞ 주민번호 정정사항 포함 발급 하셔야 합니다.

공동서류

- ① 분양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1통 포함
- ④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주민번호 및 주소정정사항 포함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및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제출)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T.1577-1000) → '계약자 본인' 명의 현재 기준 발급 요망, 공동명의고객은 각각 발급

소득증빙서류(아래 해당사항 택1)

구비서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① 재직증명서(필수)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 최근2개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세무서·국세청홈텍스 발급) - 최근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2년 입사한 경우 : 입사 이후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① 사업자등록증(필수)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 최근2개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세무서·국세청홈텍스 발급) - 최근2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자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① 무소득사실증명(필수) (세무서·국세청홈텍스 발급)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최근1년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액 미표기시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 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함) - 공단 발급 최근1년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함) - 최근년도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준비	

• 이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 대비 부채금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율(약정이자율+3%, 최고 연 15%)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기한이익상실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중도금대출 서류 준비 및 현장 상담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증료율 할인대상 및 할인 적용 시 구비서류

■ 보증료 할인 :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1) 사회배려계층 :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40% 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세무서발급 '사실증명원' 제출 요함)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 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60% 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

(3) 전자계약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를 할인

■ 보증료 할인 적용 : 보증료율을 적용한 보증료에 (1),(2),(3)의 보증료 할인율을 순차 적용

■ 보증료 할인 적용시 확인서류

대상	확인서류
저소득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_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 ○ 건강보험증(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 -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청구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수·구청장이 발급)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_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모범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분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순천조례3차 골드클래스 분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도금대출 서류접수 장소: 조례3차골드클래스**건본주택**
중도금대출 서류접수 일시: **2022.08.11~2022.08.13**

중도금대출 준비서류

공통서류

- ① 분양(공급)계약서 원본(계약금 납부 영수증 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 ③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주민번호 및 주소변동내역 포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1통 (미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⑥ 신분증 / 도장
- ⑦ 배우자 미 내점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 당행홈페이지 하단의 서식자료실 →대출서식 →위임장 검색)
- ⑧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최근년도 소득증빙서류와 등기부등본 1통 추가필요 (1주택보유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초과시 대출불가하며 해당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9억원초과)인 경우 대출불가, 해당 보유주택이 20.07.10 이후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 대출불가, 2주택이상 보유 시 대출불가 (규제대상 아파트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말함.)

소득확인서류 (아래 택1)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직증명서(필수)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2개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 최근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2년 이후 입사한 경우 : 입사 이후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p>※ 현재 재직중인 직장 소득자라면 유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등록증(필수)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2개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 최근2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자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소득사실증명(필수)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연금수령액 미표기시 수령통장 사본 포함 - 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연속 보험료 납부 및 체납액이 없어야 함) - 공단 발급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최근 3개월 연속 보험료 납부 및 체납액이 없어야 함) - 최근년도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 ※ 서류관련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대출서류 작성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작성,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하오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 보유여부확인을 위해 세대원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 동반 방문 또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포함), 위임장(주택보유주사용)이 필요합니다.
- ※ 안내사항
- 인지세는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은행, 고객 각 50%씩 부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이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잔금대출 심사시, 규제지역, 분양계약시점, 고객님의 신용도, 금융기관거래상황, 소득, 세대별 주택보유여부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상환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이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 취급 당일의 고시금리로 적용되며, 취급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 대비 부채금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약정이자율+3%, 최고 연 15%)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만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기한이외상실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체결이후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안내문은 잔금대출 서류 준비 및 현장 상담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 문화전당지점 대리 한지선 대리 이명준 (062-227-4221)